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국내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작물, 460여종 농약에 대해 약 7,000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쌀(190건), 고추(210건), 사과(151건) 등 주요 품목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많음
- 엽(경)채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부족함

## PLS 도입배경

현재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 코덱스(Codex)를 적용함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 적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등록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허용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면화씨의 A농약 적용사례:** (국내) 미설정, (코덱스) 40ppm, (호주) 15ppm
- **(현행)** 호주에서 수입시 호주 기준보다 높은 코덱스 기준을 적용하여 수입
- **(개정)** 미설정이므로 잔류허용기준 0.01ppm 이하만 수입 → (추후) 국내 기준 설정 필요

##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 1차 (2016년 12월 31일 시행)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견과종실류

**땅콩 또는 견과류** |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개암, 도토리 등

**유자종실류** | 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올리브, 면실, 유채씨, 홍화씨 등

**음료 및 감미종실류** |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너트, 과라나 등

과일류

**열대과일류** |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리치, 패션푸르트, 두리안, 망고스틴 등

### 2차 (2018년 12월 31일 시행예정)

-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 기준)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기관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본부 식품기준과

<http://www.mfds.go.kr> / 전화번호 1577-1255

##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농약사용기준이 변화됩니다.

**전** 규제물질 목록화제도(Negative List System)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

**후**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

-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

**후** PLS가 시행되면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시 적용사례

### B농약 적용사례



농산물	현행	개정
콩	코덱스 기준 적용 코덱스: 20ppm / 한국: 미설정	20ppm 적용
유자	국내 유사농산물 적용 코덱스: 미설정 / 한국: 미설정(감귤: 0.5ppm)	0.5ppm 적용
배추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 코덱스: 미설정 / 한국: 미설정(최저기준: 0.05ppm)	0.05ppm 적용